

##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### 1. 해외송·수금 서류증빙 절차 및 사전신고 기준·대상 대폭 완화

(안 제1-2조, 제4-3조, 제7-2조, 제7-14조, 제7-16조, 제7-18조, 제7-21조, 제7-22조, 제7-46조, 제8-1조 내지 제8-5조, 제9-19조, 제9-20조)

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「외국환거래법」 제정('99년) 당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불로 설정하여 현재까지 유지중
  - 은행은 사전에 외환법상 신고절차를 이행했는지 반복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실제 송·수금 단계에서 거래관련 서류증빙 요청
- 20여년 간의 경제규모 확대, 외환거래 증가 등을 감안시 일상적인 외환 거래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무증빙 기준을 완화할 필요

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해외 송·수금시 거래 당사자의 증빙서류 제출의무 금액기준 및 자본 거래 사전신고 면제 금액기준을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
- 법 개정 추진을 통해 「원칙 자유·예외규제(네거티브 체제)」로 전환하기에 앞서, 외환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 유형 들을 선별·폐지하고 사후보고 체계로 전환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무증빙 송수금 및 자본거래신고 한도 상향으로 국민·기업의 일상적인 외환거래에 대한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○ 해당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없음

## 2. 차입신고 기준 완화, 현지금융 별도규제 폐지 및 해외직접투자 불편해소 (안 제1-2조, 제2-8조, 제7-14조, 제7-14조의2, 제8-1조 내지 제8-5조, 제9-1조, 제9-5조, 제9-9조, 제10-9조, 제10-11조)

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경제규모 확대가 未반영된 금액기준, 신고(기재부/한은)·거래기관(은행) 이원화 등에 따른 기업활동 및 외환거래 불편 확대
- 국경간 자본이동이 없어 대외건전성 유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고의무도 존재하고, 사후관리 절차도 복잡

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누계 3천만불에서 연간 누계 5천만불로 상향하여 외화조달시 거래절차 완화 및 조달편의 제고
- 현지금융 규제를 폐지하여 금전대차·보증으로 통합하고, 현지금융 차입자금의 국내예치 제한 완화를 통해 외화자금 운용 자율성 확대
-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제도를 매년 1회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내용도 대폭 간소화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국내 기업의 외화운용·조달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사후관리 불편함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

### 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해당없음

### 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없음

## 다. 종합금융투자사업자(대형증권사) 대고객 일반환전 허용

(안 제2-14조, [별표 1])

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은행/비은행 간 차등 규율이 다양한 對국민·기업 외환서비스 제공 기회와 비은행의 외환분야 역량확대 기회를 제한하는 측면

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현재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법인만을 대상으로 일반환전이 가능하였으나 9개 증권사(종합금융투자사업자)가 일반 국민·법인 대상 일반환전이 가능토록 허용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증권사 對고객 일반환전 허용을 통해 외환서비스 분야에서 금융기관간 경쟁 촉진

### 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해당없음

### 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없음

#### 4. 외국인투자자의 추가계좌 개설 없는 제3자 외환거래 허용 (안 제7-37조)

#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통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한 관리은행 (custodian bank)에서만 환전하여 국내자산에 투자 가능

#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외국인투자자의 추가로 국내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

#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##### 라. 입법효과

-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권 투자에 대한 접근성 제고

##### 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해당없음

##### 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없음

## 5. 증권금융회사의 외환스왑시장 참여(안 제2-4조)

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'20.3월 증권사 파생거래(ELS 등) 증거금 납입 등 비은행권 단기 외화수요 급증이 시장불안 촉발
- 현행 외환법규상 증권금융회사는 외환 스왑시장에서 외국환중개사와의 거래가 불가하여 외화조달 및 유동성 공급에 애로

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상 증권금융회사를 외국환중개사의 상대방으로 규정하여 외환 스왑시장 참여 허용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 다양화 및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

### 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해당없음

### 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없음

## 6. 「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」 신설(안 제10-23조)

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오래된 규율, 모호한 요건, 불편한 법령해석 절차 등이 국민·기업·금융기관의 외환제도 운영에 대한 수용성 저해
- 경제·금융시장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새로운 제도개선 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다양한 인적구성의 회의체 필요

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업계·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외국환거래법령 적용 및 해석, 향후 외환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‘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’ 신설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업계·학계 등 민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외국환거래법령 해석 및 실제 법적용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

### 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해당없음

### 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없음